

## 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

- 1. 식품안전관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- 2. 소비자 정보제공, 식품폐기 감소,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등의 '유통기한' 표시제가 '소비기한' 표시제로 변경되는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'21.8.17)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- 3. 다만,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,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, 산업계 부담 및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①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② '유통기한'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(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)을 부여하고자 합니다.
- 4. 계도기간 동안 기존 포장지를 소진하고 새로운 포장지로 교체할 수 있도록 관련 영업자 등을 계도하여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5. 아울러, 소비기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·홍보 자료를 식품안전나라 (http://foodsafetykorea.go.kr > 식품·안전 > 식품표시광고 > 소비기한)에 게시하고 있으니 관할 영업자·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·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설명자료 1부. 끝.



복지위원회 등

수신자 본부 및 평가원, 지방청, 관계 부처, 시·도 관련 부서,

주무관연구관식품표시광고정전결 2022. 8.11.소진혁문재은책과장오재준

협조자

시행 식품표시광고정책과-11863 (2022. 8. 11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오송생명과학 단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189 팩스번호 043-719-2180 / sontoly33@korea.kr / 대국민 공개